

이송비 지급기준

① 이송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 ㉢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 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 ㉣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직무상 요양 교직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km 이상인 경우 와 1km 미만이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② 이송비의 인정기준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구 분	이 용 기 준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원거리 대중교통수단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자가용·택시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임이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박·항공기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의 필요성이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직무상요양 교직원과 그와 동행하

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직무상요양 교직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구 분		등 급 기 준		비 고
		1등급	2등급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원거리 대중교통 수단	고속 버스	우등고속	일반고속, 시외버스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철도	새마을호 특실, 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새마을호, KTX 비통과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 시		-	소형·중형택시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선 박		1등실	2등실	특등실 배제 (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항공기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First Class 배제 (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 ④ 이송비는 당해 교직원과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당해 교직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 동행 간호인의 간호비는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간호비 지급기준」에 의한 간호비를 지급한다.
- ⑤ 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직무상교직원과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박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2 제2호에 따른 숙박

료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⑥ 요양기관의 구급차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 기준” 중 “이송처치료 기준액표”에 의한다.

직무상요양 교직원이 구급차에 실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왕복, 시외 등으로 추가요금 지급불가)

<2014.5.1.이후>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30,000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 추가
※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을 경우 15,000원을 가산함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75,000원에 10km초과시
1km 당 1,300원 추가

<2014. 5. 1. 이전>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20,000원, 1km당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50,000원, 1km당 1,000원 추가

- ⑦ 택시요금은 해당지역의 택시 운송조합에 기본요금 및 주행요금을 확인하여 산정 하며, 자가용운전자의 경우 택시요금의 50%를 산정 지급한다.

택시요금 산정방법

$$\text{기본요금} + \left\{ \frac{\text{실제주행거리(km)} - 2\text{km}}{\text{추가인상거리 백분율}(0.142)} \right\} \times 100\text{원}$$

* 기본요금 : 2km당 3,000원, 주행요금 : 142m 당 100원

* 단, '09. 7. 1이전은 기본요금 : 2km당 1,900원, 주행요금 : 144m 당 100원

2013. 10. 12. 이전은 기본요금 : 2km당 2,400원, 주행요금 : 144m 당 100원

※ 통원은 통원횟수, 이송거리 등 자료에 의하여 지급결정 함.